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 년 11 월 25 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주)프리즘투자자문
(영문명) Frism Investment Advisory Inc.
(홈페이지) <https://www.frism.io/>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1-16, 7층(삼성동)
(전 화) 02)595-2799

대 표 이 사 : 홍춘욱

담 당 임 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홍춘욱 (전 화) 02)595-2799

작 성 자 : (직 책) 팀장
(성 명) 김민지 (전 화) 02)595-2799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5-1-1호)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127,500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60,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37,5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9조의 4(전환우선주식) ①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할 주식의 수와 내용 등은 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미만의 범위로 정한다. 제 9조의 5(상환우선주식) ①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상환우선주식은 제9조의3 제1항에도 불구하고
--------	---

	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액면가가 아닌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우선배당률을 정할 수 있다. ③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발행가액 ×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 ÷ 365 × 우선배당률]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다음날부터 발행일 이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⑤본 회사가 상환우선주식을 상환할 경우에는, 상환일정, 상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해야 한다. 제 9조의 6(상환전환우선주식) ①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제9조의4의 전환우선주식임과 동시에 제9조의5의 상환우선주식인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전환과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9조의4 및 제9조의5를 준용한다.
주식의 내용	상환전환우선주
기타	-

【상환권 및 전환권이 부여된 경우】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	--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로부터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법 제 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방법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상환일까지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이미 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상환기간	2026년 12월 13일~2029년 12월 12일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1. 본건 종류주식 1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 수(이하 “전환비율”)는 2주이며, 보통주식의 발행가액(이하 “전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한다. 2.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발행가액,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 5.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6.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그 평가가액으로 조정한다.
	전환청구기간	2024년 12월 12일~2029년 12월 12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255,000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신주의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비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한다.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로 연 [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누적적으로 우선하여 배당 받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본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채무약정 사항 등)	-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11,765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4.12.11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4.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4.11.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아니오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의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함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아니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조(신주인수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주주도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 주식수 (주)	비고
히스토리 1호펀테크투자조합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가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27,500	